

# 공 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공고 제 2014-9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대한민국 정치·경제의 중심이며 1천만이 거주하고 세계6위의 도시 경쟁력을 갖춘 서울이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은 지역간 격차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음.

서울의 강남·북을 연결하는 한강횡단 지하철은 10개 노선 중 9개 노선이 중·동부에 위치해 있고 서부지역에는 인천공항철도가 유일함.

이에 따라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을 위한 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서울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지원에 관한 기본방향을 규정함.

나. 서울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건설추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등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로 185(등촌2동 512-1) 강서구의회  
(전화 : 2600-1807, 팩스 : 2600-1840)

#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추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 서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 강서구, 마포구, 양천구,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이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명칭) 위원회의 명칭은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
2.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기타 제반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철도와 관련된 토목·건축·전기·교통·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사회·시민단체 대표

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委員)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의 재임 중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직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별 해당 업무에 대해 연구·검토하고 추진 방안을 강구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메일, 메시지 등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등 지급)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활동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효력) 본 위원회는 사업 확정 시까지 존속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